

#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984 |
|--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1. 9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## □ 개정이유

-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여가활동에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, 체력증진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축개관되는 감골시민홀등 체육시설물 관리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가.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정 : 1,271명 → 1,277명(안 제2조).

○ 집행기관 : 1,251명 → 1,257명

※ 의회사무국 : 20명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 발췌서

○ 경기도 기획 12200 - 11819(2001. 8. 25)호 공문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1,271명”을 “1,277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251명”을 “1,257명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         | 총 무 과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실·과장<br>직위·성명  | 총무과장<br>이 권 헌      |
|             | 담당·팀장<br>직위·성명 | 인사담당<br>박 미 라      |
|             | 담당자<br>성명·전화   | 전 덕 주<br>(행정 3111) |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(안)  |
|---|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271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 : <u>1,251명</u><br/>2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<br/>-----<u>1,277명</u>-----<br/>-----</p> <p>1. 집행기관 : <u>1,257명</u><br/>2. (현행과 같음)</p> |